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6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2日(金) 午後2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4面

(14時06分 開議)

1. 서울特別市城北區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총무국장 李均佑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鍊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에는 서울시 시마크로 했는데 앞으로

성북구 마크로 바꾼다 그거죠?

○總務局長 李均佑 예.

○崔東煥委員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委員長 徐化錫 성북구청장으로 통일하는 거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4時11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전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총무국장 李均佑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鍊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안전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俞鎮武委員長.

○俞鎮武委員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를 합병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는 거죠? 민방위과를 없애고?

○總務局長 李均佑 민방위과를 명칭을 변경하고 거기에 계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현재 민방위과가 3개 계가 있는데 거기에 재난관리계를 하나 신설해서.

○俞鎮武委員 재난관리계가 하나 더 생깁니까? 민방위과에.

○總務局長 李均佑 예.

○委員長 徐化錫 인력보장 4명 한다는데 그 인력은 어디서,

○總務局長 李均佑 그것은 새로 정원을 늘려야죠.

○委員長 徐化錫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현재 인원을 이동시키는 겁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계장 한사람만 인원을 증가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委員長 徐化錫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조정해서 한다,

○總務局長 李均佑 우리 총정원이 조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 한사람은 증원해야 됩니다.

○俞鎮武委員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委員長 徐化錫 명칭만 바뀌는 거죠.

○俞鎮武委員 우리가 단어가 길면 기억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로 써서 민재과로 쓴다든지 그런 의견은 없으세요?

빨리 알아야 되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그말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민방위가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업무거든요.

○俞鎮武委員 그러니까 약칭으로 민재과 하면 빨리 기억하기가 좋겠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관청의 공식명칭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지마는 전국에 광역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칭을 통일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압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대한민국 전체의, 각 지방에 있는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로 다 통일적으로.

○崔桂洛委員 崔桂洛委員입니다. 보시게 되면 구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구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어떠한 분들을 이 위원회에 위촉하실 겁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구안전대책위원회는 안전에 관련되는 소방서장이라든가 기타 안전, 이렇게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崔桂洛委員 보건소장님도 들어갑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예.

○總務課長 田喜久 앞으로 안전대책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님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지역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崔桂洛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질의 있으십니까?

○崔東煥委員 재난관리과로 하면 안됩니까? 전국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구청에 없는 재개발과도 만들었는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總務課長 田喜久 아닙니다. 그점은 민방위 업무가, 국가위임사무는 통일돼있는 것을 굳이 별도로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민방위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재난관리 업무가 강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불편하실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름이 너무 길고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俞鎮武委員 아니, 우리구만 민재과는 민방위 재난관리를 한대라고 우리가 알고있으면 되는거지 우리는 우리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린 것과 같이 전체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 명칭이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尹晚九委員 그러면 전국에서는 민방위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지금 전부다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일제히 변경하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본청에서도 과거에 민방위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되고,

○崔東煥委員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제공업무, 방첩업무 이랬는데 점점 재난관리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민방위과를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용적인 특성대로 그냥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가지고 쫓아갈 필요가 있겠냐고 묻고싶은데요.

○總務課長 田喜久 쫓아간다고 보다는 저희들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해당사항이랄지 광역적으로 협력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업무라고 하면 다소 우리쪽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통일된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내소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민방위병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민방위 관계를 전혀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總務課長 田喜久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고유한 자긍심을 기르는 그런 쪽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 주장하시는데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다소 이의가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예, 좋습니다.

또 安傑瑤委員님.

○安傑瑤委員 安傑瑤委員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 내용중에 분장업무 추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계획 사업들

은 다 적혀있는데 구 안전대책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좀 재고해봐야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이렇게 우리 성북구의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고 물론 운영관리요미에 따라 다 효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문제는 어디까지나 검토해봐야 할 이런 사안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습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이 구 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지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만약에 안전에 관련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한전관계라든가 대형건물 소유자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직 세부적 규정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려올런지 모르겠지만도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安傑瑤委員 위원회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원만히 재난대비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안들을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위원회에 책임전가 아닌 회피성 문제가 잇따를 수 있으며 또 위원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 일비도 쥐야되고 여러가지로 그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만큼에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위원회가 참 몇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은 각 조례에 뒤따르는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이 구성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맥락에서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아직 없다고 하시는데 있게되면 좀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俞鎮武委員님.

○俞鎮武委員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각 동에 분자생단체가 구청에서 동으로 이월해서 동에

서 운영을 하는데 실예를 들면 한 동에 위원이 둘인데 어느 위원은 거기 나오라고 불러주고 어느 위원은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형평에 어긋나서 그렇게 되므로써 양분이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한 동에 위원이 둘 아닙니까? 말하자면

○總務課長 田喜久 우리 구 의원님 말씀입니까?

○俞鎮武委員 그런데 한 위원님은 거기 가게되고 어느 위원님은 참석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초청을 받아 간 한 위원님은 좋지만 초청을 못받은 위원님은 소외되는 기분이 들지않겠어요? 그런 예가 빈번하게 어느 동이고 나오는데 차라리 초청을 하려면 각 위원님들을 공히 초청을 해주든지 아니면 빼버리려면 다 빼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런 것이 본인 신상에도 영향이 가고,

○總務局長 李均佑 그런 것은 우리가 통일성을 기하도록 동에 앞으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俞鎮武委員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이 별도로시를 내려서 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주든지 빼버리려면 빼버리든지

○總務課長 田喜久 그런데 위원님 이점은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면 동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또 동민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이 되게 돼있는데 확실적으로 의원님을 두 분을 무조건 어느 위원회에 모셔라 무조건 빼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취지를 백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일제히 다 뺄려면 빼고 다 모실려면 모셔라 이런 지침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4時26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鍊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桂洛委員長님.

○崔桂洛委員 제안설명 중 보시게 되면 방법대원 88명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방법대원이 몇명이고 88명을 감축하게 되면 몇 명이 우리 성북구에 방법대원이 남는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 88명을 감축하게 되면 구청 무슨 부서에 들어가게 됩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법원이 작년까지만해도 236명이었습니다, 정원이. 이 중에서 작년에 방법원이 타구로 전출가고 이렇게 해서 88명이 전출나가고 지금현재 236명에서 88명을 빼면 148명

이 현재 남는겁니다.

○崔桂洛委員 현재 성북구에 148명의 방법대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總務局長 李均佑 예. 이것은 현실화시킨 겁니다.

○俞鎮武委員 지금 보건소 81명에서 87명인데 직제현황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6명 의사인데 6명 의사는 무슨과 무슨과 무슨과 의사가 없습니까?

○崔桂洛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방법대원들이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각 동에 방법대원이 몇 사람 없게 되는데, 치안담당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현재 각 동에 보면 파출소별로 방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總務局長 李均佑 그대로 있고 인원만.

○崔桂洛委員 방법원이 없는데 방법위원이

○總務局長 李均佑 방법원이 이미 나갔어요. 88명이 타구로 나가서 없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현재 이 88명이 없는 숫자죠.

○總務局長 李均佑 예.

○委員長 徐化錫 우리 성북구에 없어요?

○總務局長 李均佑 작년에 벌써 나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36명인데,

○委員長 徐化錫 정원속에만 포함되어 있었지 실제로 없었다는 얘기죠?

○總務局長 李均佑 지금 우리가 본청에다 문제점으로 우리가 타구보다 너무 많다 요구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崔桂洛委員 그럼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방법대원들을 구청에서 흡수해서 148명을 우선 교통안전요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각 동에 파출소에 있는 방법대원 몇명 되지는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 양반들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누구 말마따나 찬밥신세인데,

○委員長 徐化錫 현재 방법원 정년이 53세가 되죠?

○總務局長 李均佑 예.

○委員長 徐化錫 53세까지 계속 해야 할 겁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53세기 때문에 58세로 해달라고 청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안된다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전에도 예산심의에도 말했지만 방법원은 이것에 대한 근무명령이라든가 지휘감독권은 전부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다만 봉급, 재정력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정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桂洛委員 저희가 돈이 나가니까, 전에 방법원들을 지금 현재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최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법원은 지금 논의를 하자면 여러가지 업무도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또 서울특별시하고 몇년전부터 방법원 활용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서 대책이 없어서 내린 결론이 재원은, 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고, 원래 봉급도 방법비를 받아가지고 충당했던 겁니다. 업무는 경찰서 지휘하에 업무를 했고, 그 방법비를 받지 않도록 결정을 하니까 재원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채용인력을 전부다 해고를 할 수도 없는 처지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일은 경찰서에서 시키고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구 공히 같이 낸다, 그래서 상위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방법원 인건비는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구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우리 구의 148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인력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宋夏星委員 줄이는 것이 마땅하네요.

○總務課長 田喜久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崔桂洛委員 줄이는 것이 마땅한데요, 지금 각 동별로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상 파출소에 가보게 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두군데인데, 방법대원 몇분 되지도 않아요. 상당히 소외감을 갖는데,

○總務課長 田喜久 그럴겁니다. 지금은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崔桂洛委員 방법위원회는 몇십명씩되요.

○宋夏星委員 방법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崔桂洛委員 방법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법대원때문에 있는 것이 방법위원회인데,

○宋夏星委員 방법위원들도 유명무실한 것이 지 실질적으로 방법위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委員長 徐化錫 질의하세요. 토론때 또 하시고,

金振權委員님.

○俞鎮武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金振權委員님이 먼저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俞鎮武委員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하다가 얘기가 끊겨서 이어서 합니다.

왜냐면 81명인데 87명으로 증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제현황을 쭉보시고, 6명 의사면 무슨 치과라든지 정형외과의사라든지 무슨 의사명이 있어야지 무조건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됩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이번에 보건소 6명은 치과의사가 한사람, 그다음에 일반의사가 네사람, 산부인과 한 사람, 이렇게

○委員長 徐化錫 지금까지 있던 거죠?

○總務局長 李均佑 과거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일반정원으로 한 겁니다.

○委員長 徐化錫 현재까지 있던 의사들이죠?

○總務局長 李均佑 예.

○委員長 徐化錫 정원에만 포함안됐던 의사.

○總務局長 李均佑 이번에 정원에 정식으로 포함된 겁니다.

○俞鎮武委員 이렇게 했을 때하고 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임명을 했었을 때하고

○總務課長 田喜久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용은 기왕에 되어있는데, 정원 통제권 밖에 있던 전문직의사입니다. 정원으로 통제를 안받던 건데 이제는 이 전문직 요원들도 정원에 포함시켜서 정원이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겁니다.

○俞鎮武委員 급여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전혀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어서 의사를 임의로 채용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의회 승인을 받는 조례에다 분명히 명시를 하게되면 의회 통제를 받도록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俞鎮武委員 퇴직금 같은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전혀 신분이나 보수에 차이도 없고 다만 의회의 통제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宋夏星委員 의사의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지금 보수표를 봐야되겠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宋夏星委員 적어도 2~300 켄야 되지않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오래된 가급이라면 200만원 넘고 적은 사람은 200만원도 안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宋夏星委員 아니죠. 레지던트가 안된 사람이면 모르지만

○總務課長 田喜久 레지던트가 안된 사람이 아니고 정식의사이면서도

○宋夏星委員 인턴과정이나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정식 의사라고 친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켄야 할텐데 그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매년 되어있던 겁니다.

○宋夏星委員 의사가 6명이 증원되었으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종래와 전혀 다른 것 없이

○總務局長 李均佑 보수도 다 같고 정원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總務課長 田喜久 정원 외 관리하던 공무원을 정원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宋夏星委員 그전에는 전혀 정원이 아니고 별도의 의사였는데, 정원으로 들어와서 의사행위를 한다는 말이지요?

○總務課長 田喜久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으로는 의회통제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예. 崔東煥幹事님.

○崔東煥委員 의사들 중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보건의가,

○崔東煥委員 병역업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말입니다.

○總務課長 田喜久 없습니다.

○崔東煥委員 전임 전문직 가급하고 나급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지금 가급 나급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구분 기준이 전문의 이상이 있으면 가급으로 채용하고 전문의 이상이 없으면 나급으로 채용합니다.

다른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崔東煥委員 이 사람들이 직제로 들어오면 전임전문직 가급으로 나급으로 공식적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직제규칙으로 우리 일반직처럼 5급 6급 4급 이런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그것은 보수만 그렇고 가급 나급으로 됩니다. 전문직 가급 나급하고 보수는 5급상당 이렇게.

○崔東煥委員 그러면 가급 나급 다 5급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가급은 5급입니다.

○崔東煥委員 나급은요?

○總務課長 田喜久 굳이 비교를 하자면 6급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비교를 한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崔東煥委員 어쨌든 직제 조적안에 들어오면 그런식으로 어차피 직렬이 생기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아닙니다. 일반공무원은 계선조직이 되어서 급이 분명한데 전문직 공무원은 지휘분류제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억지비교입니다. 6급에 해당된다거나 5급에 해당된다거나 하는 것이.

○崔東煥委員 어쨌든 편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편제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수도 6급보수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자리도 보건소 의사가 굳이 비교해서 6급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교는 안맞는 비교고, 업무도 완전히 독립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崔東煥委員 직제 규정에 그런 사항이 안나왔다 이거죠?

○總務課長 田喜久 예.

○委員長 徐化錫 金振權委員님.

○金振權委員 제가 여쭙볼 것은 다르게 아니고 지금 방법원이 고용직으로 88명을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법원 문제, 민방위 재난관리계장 6급 임용직, 이것도 문제인데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 그것이 우리구 체제로 넘어오면 사서직 직급이 고용잡급으로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사서직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 어디있으며 그렇게 직급을 사서직 전문직으로 뒤가지고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그런 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잡급고용직으로 채용을 하느냐, 그랬을때 그 문제도 여기에 조례안중에 같이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여쭙보는 겁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그것은 이번에 새마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종래의 이동도서관 직원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새마을지회 소관이었어요. 서울시 새마을, 거기서 돈을 주고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없애버리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된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에 대한 사서직을 우리가 일반직열에 포함안시키고 그것을 잡급으로 6급 상당, 봉급만 6급 상당으로 이렇게,

○金振權委員 그것을 전문직으로 요하는 사서직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자의든 타의든 그만뒀다고 봤을때 그후에 후임자를 다음에 갖다앉혀야되는데 그다음엔 상용잡급직으로 전문성이 없는 요원을 갖다 앉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보수만 상용잡급이고 그 직렬은 사서직으로 해야되죠.

○金振權委員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먼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구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보면 그것이 그때 가서 사서전문직을 채용한다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동도서관이 공보실로 넘어오면서 잡급직을 쓸 수가 없

는거예요, 사실은. 전문직화 해야되는 과정에서 잡급직으로 쓴다고 봤을때 그게 취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總務課長 田喜久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문고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구가 직영함에 따라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실직이 돼야됩니다.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나 고용측면이나 여러가지로 고려할때 열심히 일해오던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는 처사는 그리 옳은 것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용잡급으로 채용해서 계속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래 이 업무가 대단한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그분들을 전문직으로 채용한다면 우리 인력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구민 구립도서관이 생겨서 전문직 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재검토를 할 사항이지 지금은 상용잡급으로 채용해 드리는 것만 해도 구청에서는 그분들을 상당히 배려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용잡급이라 해서 전문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력관리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보수체계에 있어서, 상용잡급이라 해서 전문성이 없는게 아니예요. 상용잡급도 얼마든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왜 잡급직으로 하나면 일반직으로 전문직을 해놓으면 이것은 수당줘야지, 연40%, 그다음에 정근수당 200%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 연금 이렇게 있는데 상용잡급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런 기동성이 있는데, 상용잡급이라 해서 전문성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직으로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라든가 인력관리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金振權委員 현재는 그 사람들을 신변보장을 해준다고 보지만 그 신변보장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날게 아니고 그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만 둔 다음에는 후임자로 갖다 앉히는 것이 상용잡급직에 전문성이 배제된 사람들을 갖다 앉히면, 사실 저게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거예요. 그렇다고 봤을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總務局長 李均佑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상용잡급이 약하죠.

○總務課長 田喜久 그점은 96년 예산에 구립도서관이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유업무로 치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과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은.

왜그러나하면 전체적으로 이동도서관이 과거에 책을 사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던 오지같은 데에 이동도서관이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여러가지 사항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동도서관 운영의 실효성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고 과도적이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이 생길때 지금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던 문제는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東煥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 의사들을 정원으로 안넣고 계약직으로 다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를 정원으로 하려고 한다면 일반 직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직급이 없어져야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아닙니다. 그것은 전임전문직이라는 정원을 따로 관리합니다.

○崔東煥委員 그게 아니라 총정원이 보건소가 87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총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린다면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감축이 돼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건사업이나 필요에 의해서 의사를 더 필요로 한다고 했을때 지금 현재대로 계약하면 되는데 총정원에 넣으면 다른 직급이 없어져야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

든요.

○總務課長 田喜久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6명이 정원이 승인이 돼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늘어날 것 같으면 5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6명의 증원요인을,

○崔東煥委員 그러면 정원조례만 해서 또 더 늘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예. 늘려야 되겠죠. 타당성을 판단해가지고

○宋夏星委員 정원이 몇명입니까? 구청정원이 몇명입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998명입니다.

○崔東煥委員 총정원이 내무부나 서울시의 기준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專門委員 宋鍊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죠.

○崔東煥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 의사를 한 두명 더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총정원에 더 넣으면 6명으로 묶이는 거예요.

○總務課長 田喜久 전임전문직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처럼 5급을 하나 줄여가지고 하나 늘린다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늘릴 필요가 있으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崔東煥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냐고요?

○總務課長 田喜久 승인을 얻어서 승인을 받고해야죠.

○崔東煥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잡급이 필요하다면 만약 정원을 안 늘린다고 했을때 다른 5급을 줄이고,

○總務課長 田喜久 안됩니다.

○崔東煥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俞鎮武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 의사가 6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있는 의사가 모두 6명입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그렇습니다. 6명입니다.

○崔東煥委員 만약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상급기관에서 허가를 안해준다면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의 제기가 생기는데 굳이 이 부분을 빼고 우리가 필요해서 진짜로 의사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약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崔東煥委員 아니,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總務課長 田喜久 그렇게 안되죠. 예산도 확보해야 될뿐만 아니라,

○崔東煥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산을 계약적으로 해서.

○總務課長 田喜久 아닙니다. 내역적으로 정원이 승인이 돼있습니다. 6명으로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

○崔東煥委員 그것은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올 8월달인가 그때 얘기고 그 전에는 계속 계약적으로 해왔습니까?

○總務課長 田喜久 계약적으로 한 것도 시의 승인을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구의 임의로 못해왔던 것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자, 더이상 질의

○宋夏星委員 잠깐, 아까 998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14명으로 돼있네요.

○總務局長 李均佑 88명이 떨어지고.

○宋夏星委員 몇명이 증원됐는데 의사 6명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의사는 밑에 보건소에 별도로 정원이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보건소는 별도 인원으로 하고, 또 88명은 고용직 방법원이고, 910명이 되는데서 4명이 증원된거죠. 교통전문요원이 3명, 계약 한 명, 자,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

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3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金 壽 榮	金 振 權	宋 夏 星
申 宗 鉉	安 傑 珞	俞 鎮 武
尹 晚 丸	尹 弘 老	崔 桂 洛

○缺席委員 1人

朴 時 俊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

○參席公務員

總 務 局 長	李 均 佑
總 務 課 長	田 喜 久